

「전농동 152-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(신속통합기획 후보지)」
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[예비추진위원장, 예비감사]선거를 위한

선거인명부 열람 공고

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(6차) 후보지 선정(2023. 11. 22.)된 전농동 152-65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76조 및 「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40호, 2011. 6. 2.)」 제13조에 따라 2026년 8월 8일 실시 예정인 전농동 152-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(신속통합기획 후보지)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(예비추진위원장, 예비감사)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2일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1. 열람기간 : 2026. 6. 22.(월) ~ 2026. 7. 8.(수)

가. 열람시간 : 09:00 ~ 18:00 [※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제외]

나. 안내사항 : 열람기간 중 주말(토·일요일) 열람불가

2. 열람장소

구분	장소	주소
1	동대문구청 4층, 주거정비과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, 4층 (용두동)
2	전농동 152-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사무실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8길 8, 1층 (전농동)

3. **열람내용** : 전농동 152-6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(신속통합기획 후보지)
예비임원(예비추진위원장, 예비감사)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

4. 안내사항

가. 선거권에 대한 사항

-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,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※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합니다.

나.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- 1)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선거인명부에 명의변경, 기재 사항의 누락·오기 등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열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.

- 2) 제출서류 :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(붙임 제1호 서식)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

다.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

- 1)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,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기간 내에 대표소유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가)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(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동의 필요)

나)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

다)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

- 2) 제출서류

가)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(붙임 제2호 서식)

나) 대표소유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

라.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

1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가)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

나)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
다)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

2) 제출서류

가) 위임장·대리인지정서(붙임 제3호 서식)

나)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증명서류 각 1부

다) 해외거주자의 경우, 해외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
마. 소유권 변동(매매, 상속 등)에 관한 사항

－ 명부 작성 이후 소유권 변동(매매, 상속 등)이 발생한 경우, 열람기간내에 소유권 이전 자료(등기부등본)을 제출하여야 하며,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이후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바. 열람에 관한 사항

－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(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)에 해당되는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,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.

※ 제출양식(이의신청서,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,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)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(<https://cleanup.seoul.go.kr/cafe/mainIndx.do?cafeUrl=wjsshd15>)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.

5. 문 의

가.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1팀 (☎ 02-2127-4671)

나. 공공지원 사무실 (☎ 02-2213-0152)